

현 장 설 명 서 및 시 방 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 가스 측정기 설치공사]

강원대학교병원

I. 일반사항

- 1) 공 사 명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 가스 측정기 설치공사
- 2) 공사위치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 3) 공사개요
 - 가) 공사규모
 - 공사범위 : 강원대학교병원 일원 (공사내용 참조)
 - 나) 공사내용
 - 가스측정기(CO2) ~ 모니터링 시스템(전광판) 통신선로 포설
 - 가스측정기(CO2) 설치
 - 가스측정기(CO2) 모니터링 시스템(전광판) 설치 (방호구역, 자동제어실)

※ 공사 세부내용은 필히 현장 방문하여 여건 및 공사방법 확인 할 것.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5) 공사면허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II. 특기사항

1. 본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는 강원대학교병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 가스 측정기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일 시점의 관계법령에 준하여 시공한다.
3. 본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 불명확한 항목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행한 후 강원대학교병원의 의견과 해석을 받아야 하며, 어구의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계약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계약 후 착수계를 제출하며, 현장관리 및 시공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본 작업에 사용하는 자재는 모두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자재는 KS인증 또는 KFI형식승인 또는 국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품목이어야 한다.
6. 계약자는 공정별 작업 착수 및 다음 공정에 임할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한다.
7.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및 야간작업을 실시 할 경우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
8. 계약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강원대학교 병원의 모든 시설물의 이동,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9. 본 공사 중 내역과 상이하거나 부합하는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변경하여 시공 할 수 있다.
10. 본 공사 중 모든 관청 및 각종 인 · 허가 사항은 계약자가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하며,

본 공사 완수 전에 관계기관의 제반서류 및 인·허가 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시설물의 인계·인수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의 완수로 인하여 필요한 시험운전 등에 대한 필요한 부대비 및 사용료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2. 본 공사는 천재지변 및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사항 이외의 상황으로 완수일이 지연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지체보상금을 부과한다.
13. 본 공사에 있어 계약자는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발생시 계약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4. 본 공사시 계약자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현장의 작업차량과 기타사항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5.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당 현장의 특수성(종합병원)을 작업자에게 인지시키고 공사를 시행한다.
16.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용한 자재 및 공구 등은 작업 종료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분실 및 도난에 주의하고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7. 계약자는 본 공사 완수 시 모든 작업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8. 계약자는 본 공사 완수 시 하자보증기간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9. 공사 중 현장 시설물의 파손 및 오염에 주의하며 보양(바닥 보양 및 기존 시설물 비닐 보양 설치)을 철저히 해야하며, 기존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계약상 대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서 훼손된 기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해당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20.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가) 당초 계약된 건설폐기물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 및 기준에 의하여 정산 변경처리한다.
 - 나)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당해 현장의 폐기물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 주단을 요구할시 수급인은 즉시 따라야 한다.
 - 라)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8조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운반비를 조정한다.
 - 마) 공사중 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외 자재 포장재, 신규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강원대학교병원 시설과

< 공사 내용 문의 ☎ 033) 258-9331 >